



의안번호	제 2020 - 1호
의 결 연 월 일	2020. 1. 6. (제99차 회의)

보  
고  
안  
건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1
II. 자문위원 연임 위촉	
1. 개요 .....	1
2. 진행경과 .....	1
3. 자문위원 명단 .....	1
III.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1
1. 개요 .....	
2.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	
IV.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1
1. 개요 .....	
2. 관련 규정 .....	
3. 공개 방법 .....	
4. 추진 일정 .....	
V.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	
2. 관련 규정 .....	
3. 의견수렴 계획 .....	
4. 시행 일정 .....	
V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 1
2. 서면질의 등 민원 및 회신 ..... 1

##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130차	2019. 12. 23.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균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 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li><li>○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 회신 검토</li></ul>

## II. 자문위원 연임 위촉

###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방법 이외에도 운영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을 비롯한 양형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자문위원단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명망가·전문가로 구성

### 2. 진행경과

- 고문현, 이상수, 장영민 위원 2019. 12. 9.자로 각 임기만료
- 고문현, 이상수, 장영민 위원 2019. 12. 10.자로 각 연임위촉

### 3. 자문위원 명단

분야	성명	경력	최초위촉일
학계	문채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 1. 7.
	윤영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 1. 7.
	오미영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4. 3. 10.
	홍은희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 8. 21.
	문영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휴먼아시아 대표)	”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 12. 10.
	고문현	승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장영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언론계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	14. 3. 10.
	변상욱	CBS 대기자	17. 8. 21.
시민, 사회단체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14. 3. 10.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17. 8. 21.

### III.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1. 개요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 대상 기준안

- 전문위원단 검토 내용을 기초로 양형위원회 제97차 회의(2019. 11. 25.)에서 의결한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나. 조회 기간

- 2019. 11. 7. ~ 2019. 12. 9.

##### 다. 회신 기관

-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2개 조회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 라. 회신자료

- 별첨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와 같음

#### 2.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 가. 대법원

- 적절한 수정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 나. 법무부

- 의견 없음

##### 다. 대한변호사협회

###### (1)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현행 선거범죄 양형기준은 2012. 8. 20. 의결되어 2012. 9. 1. 부터 시행됨.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된 이후 4차례(2014. 2. 13.,



2014. 5. 14., 2015. 12. 24., 2017. 2. 8.) 공직선거법이 개정됨. 그 결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일부 선거범죄에 대하여 ① 법정형이 높아지거나 하한이 정해지고, ② 구성요건이 세분화되거나 내용이 보충, 수정됨. 개정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기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실무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높음.

##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양형기준 수정안 참조

## (3) 검토의견 : 보완의견

### (가) 결론의 요약

수정안 10쪽부터 11쪽까지의 3.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의 유형분류는 5쪽과 상충되므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일부) 벌금형의 형량범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나) 구체적 검토

#### 1)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 유형 분류

수정안 5쪽에서는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 (제252조 제1항)는 3유형에 포섭’하고,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수정안 11쪽에서는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와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를 여전히 제1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수정안 5쪽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수정안 11쪽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벌금형 형량범위에 관한 논의

## 가) 기존 논의

2012. 7. 30.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제57차 전체회의에 따르면, 선거범죄의 매수 및 이해유도형 기본영역에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게 권고형량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도 제시하였고, 대한변협도 2012. 7. 23. 자 의견서에서 선거범죄에서 기본형과 가중형에도 벌금형을 두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제57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최종 의결을 불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영역에 벌금형을 추가하게 되면 큰 틀의 변경이 불가피하고, 다른 유형과 체계적 불일치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현행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데 의견이 일치’되어 현행과 같은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전문위원 함석천, 최형표가 작성한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39쪽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감경 영역에만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하되, 하한은 당선 무효형 이상을 권고할 필요’ 하고, 40쪽에서 기부행위 금지·제한위반죄는 ‘원칙적으로 기본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권고하고, 가중영역에는 징역형만을, 감경영역에서는 당선유효형의 선택이 가능한 벌금형만을 권고함.’ 이라고, 40쪽 이하에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비방죄는 ‘기본영역은 물론이고 가중영역에서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 해설 I. 서론 2. 양형기준의 적용범위<sup>1)</sup>에서 기재된 “구공판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

1) 동일한 내용이 2018년도 양형기준 609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다. 양형기준이 벌금형에 관한 기준을 별개로 또는 징역형과 병행하여 제시하거나, 벌금형 선택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지침을 설정하지 않는 한,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의미는, 감경, 기본, 가중 영역 중 어느 한 영역이라도 벌금형이 기재되어 있으면, 벌금형이 기재되지 않은 기본영역이나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sup>2)</sup>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본문에 따라 양형의 이유를 판결서에 적어야 합니다.

#### 나) 수정안을 마련하여 논의한 내용

2019. 10. 7.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제128차 전체회의에서 ‘2012년 양형기준 최초 설정 당시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에 대하여서는 엄정한 처벌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권고함(반면 다른 유형의 경우 기본영역 또는 가중영역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권고함). 수정된 양형기준에서도 같은 원칙을 유지함’이라는 의견을 도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영역, 가중영역에 벌금형이 없던 다른 유형의 선거범죄에서 벌금형을 기본영역이나 가중영역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 3) 수정안에 존재하는 벌금형 관련 문제점

##### 가) 감경, 기본, 가중 형량범위와 추가 가중, 감경

수정안에 따르면,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하고(수정안 22쪽<sup>3)</sup>),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은 선고하는 것이 양형기준을 벗어나기에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본문에 따라 양형의 이유를 판결서에 적어야 합니다.

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고, 2)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수정안 23쪽4)

따라서 가중적 형량범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감경적 형량범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감경적 형량범위에서 상한을 가중하는 것을 양형기준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나) 문제되지 않는 양형기준 내용

1.매수 및 이해 유도죄 중 제5유형은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고, 4.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죄 중 제3유형도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어, 벌금형과 관련한 아래의 문제가 없습니다.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죄 중 제1유형과 제2유형은 감경, 기본, 가중 형량범위에 모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sup>5)</sup>, 가중 형량범위에서 다시 가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에서 제1유형 후보자비방은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가중적 형량범위의 상한인 4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양형기준에 따르면 다시 1/2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고, 500만원을 선고하는 게 양형기준상 가능합니다.<sup>6)</sup> 따라서 위 양 유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3) 2018년도 양형기준 600쪽에서도 동일합니다.

4) 2018년도 양형기준 601쪽에서도 동일합니다.

5)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선택형으로, 감경이나 기본 영역에서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6) 1/2 범위 안에서 가중한 600만원이 법정형 상한인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500만원을 선고하게 됩니다.(수정안 23쪽, 2018년도 양형기준 601쪽)

으로 판단됩니다.

#### 다) 문제가 되는 양형기준

##### ○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중 제1유형은 (벌금형) 법정형 상한이 1천만원, 3천만원인 범죄인데, 감경 형량범위에서만 500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하여, 양형기준에 따르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혹은 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제2유형 중 법정형 상한이 1천만원인 범죄(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만 감경 형량범위에서 500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sup>7)</sup>, 법정형이 3천만원이나 5천만원인 범죄는 감경 형량범위에서 1,500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의 범죄에서는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후자의 범죄에서는 1,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양형기준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1.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중 제3유형은 법정형 상한이 2천만원인 범죄와 5천만원인 범죄가 있는데, 감경 형량범위에서 2천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여, 법정형 상한이 5천만원인 범죄는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양형기준상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제4유형은 법정형 상한이 5천만원, 7천만원 범죄가 있는데, 감경 형량범위에서 2,5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고, 기본과 가중 형량범위에서는 징역형 선고만 가능하여, 2,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양형기준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

7) 상한을 1,500만원의 1/3로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는 감경적 형량범위와 기본 형량범위에  
만 벌금형이 있는데, 기부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행위는 법정형  
이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본 형량범위를 선택해도 5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는 반면,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 상한이 1천만원이나, 가중적 형량범위에는 징  
역형만 있어, 양형기준에 따르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의 벌  
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 중 제2유형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는 벌금의 법정형 상한이 3천만원으로 제2유형에 속하여 1/2 가중  
해도 1,500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벌금형 법정형 상한이 600  
만원, 1천만원인 당내 경선 관련 당선·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동일한 형량범위가 타당한지, 법정형을 달리 규정한 입법자의 의  
사, 당내경선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선거에서 해당 행위를 했을 때의 불법(가벌성)의 정도  
가 다르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수정안의 벌금형 형량범위가 타당하  
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sup>8)</sup>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 중 제3유형은 감경적 형량범위와 기본  
형량범위에만 벌금형이 있고 가중적 형량범위에는 징역형만 있는  
데, 법정형이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인 범죄에서 1천만원 초  
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양형기준상 배제되어 있  
습니다.<sup>9)</sup>

---

8)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처음 마련할 당시인 2012년 전문위원 함석천, 최형표가 작성한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설  
명자료 25쪽에서는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범죄유형을 동일한 유형에 포섭하는 게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며,  
법정형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양형기준에서 형량범위에 차등을 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거론하였는데, 서로 다른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것의 문제점으로 해당 논거가 동일  
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 법정형상 가능한 범위의 벌금을 양형기준에서 배제하는 것의 문제점

양형기준이 비록 판사를 구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고, 혹은 양형기준의 벌금형 금액을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에 양형이유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판사로 하여금 양형기준을 따르도록 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정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량범위에 속함에도, 양형기준상 선고 가능한 범위에서 제외하고, 감경이나 기본 형량범위에만 벌금형을 규정하여, 가중형량범위에서만 가능한 추가적인 가중도 할 수 없게 하여, 입법자가 마련한 법정형의 범위 중 일부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벌금형은 재산형으로 자유형인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에 해당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하지 않고, 노역장 유치기간이 징역형보다 길지 않다면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기본, 가중형량범위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처음으로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때에, 대법원과 대한변협에서 기본 형량범위나 가중 형량범위에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제57차 전체회의에서는 ‘양형기준 최종 의결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영역에 벌금형을 추가하게 되면 큰 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제128차 전체회의에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에서 엄정한 처벌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감경영역에만 벌금형을 권고하는 원칙을 수정된 양형기준에서도 유지'한다고 의결하고, 다른 유형의 선거범죄에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과 달리 2019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는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수정(추가)하지 않은 수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라. 대한법무사협회**

- 찬성의견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



## IV.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20. 1. 6. 양형위원회 제99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20. 1.중순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20. 2. 초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 V.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투명화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3. 의견수렴 계획

#### 가. 대상 기준안

- 제99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균형법상 성

범죄, 선거범죄)

나.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의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보 건 복 지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9		행 정 안 전 부	법무담당관
10		여 성 가 족 부	법무감사담당관
11		국 방 부	법무관리관
12		헌 법 재 관 소	행정관리국장
13		연 구 기 관	대 한 범 죄 학 회
14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5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6	연구기관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7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8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9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20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21		한 국 피 해 자 학 회	총무간사
22		한 국 형 사 소 송 법 학 회	총무간사
23		한 국 형 사 판 례 연 구 회	총무간사
24		유관기관	대 한 법 무 사 협 회
25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26	한 국 범 죄 방 지 재 단		사무총장
27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9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31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사무총장
32	시민단체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33		중 앙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정책연구팀장
34		중 앙 아 동 보 호 전 문 기 관	정책연구팀장
35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청년참여연대

연번	구분	기관	비고
36	시 민 단 체	한 국 가 정 법 률 상 담 소	총무부장
37		한 국 Y M C A 전 국 연 맹	사무총장
38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39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사무총장
40		한 국 성 폭 력 상 담 소	소장
41		한 국 여 성 의 전 화	사무처장
42		한 국 여 성 민 우 회	사무처장
43		전 국 성 폭 력 상 담 소 협 의 회	사무처장

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행 정 부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의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7	행 정 부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보 건 복 지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9		행 정 안 전 부	법무담당관
10		여 성 가 족 부	법무감사담당관
11		국 방 부	법무관리관
12		국 토 교 통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3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4	연 구 기 관	대 한 범 죄 학 회	사무국장
15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6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7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8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9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20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21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22		한 국 피 해 자 학 회	총무간사
23		한 국 형 사 소 송 법 학 회	총무간사
24		한 국 형 사 판 례 연 구 회	총무간사
25	유 관 기 관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6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27		한 국 범 죄 방 지 재 단	사무총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28	유 관 기 관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32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사무총장
33	시 민 단 체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사무국장
34		중 앙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정책연구팀장
35		중 앙 아 동 보 호 전 문 기 관	정책연구팀장
36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청년참여연대
37		한 국 가 정 법 률 상 담 소	총무부장
38		한 국 Y M C A 전 국 연 맹	사무총장
39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40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사무총장
41		한 국 여 성 의 전 화	사무처장
42		한 국 여 성 민 우 회	사무처장

####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기간 : 2020. 1. 13. ~ 2. 24.

○ 의견조회 취합 : 2020. 2. 24.

※ 의견수렴 결과는 위원회 제101차 회의(2020. 3. 23.) 시 보고 예정



## V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 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9.11.17.	○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성범죄 양형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
2	2019.11.25.	○ 성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3	2019.11.25.	○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성범죄 양형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
4	2019.11.25.	○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성범죄 양형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
5	2019.11.25.	○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성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6	2019.11.25.	○ 성범죄자 양형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는 내용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성범죄 양형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귀하의 의견은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성범죄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성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은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제7기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였고, 양형위원회는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성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은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성범죄자 양형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는 귀하의 의견은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 서면질의 등 민원 및 회신

### 가. 여성가족부 의견서

#### (1) 의견서(2019. 8. 28.)

##### (가) 들어가며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반기('19.4월~'20.4월)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피해의 특수성이 반영된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 (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라고 판단합니다.

##### (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sup>9)</sup>의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 양형 시 고려해야 할 감경 요소와 가중요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감경요소	가중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li><li>○ 초범</li><li>○ 단발성(1회)의 범행</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피해자) 불특정, 다수, 미성년자, 장애인</li><li>○ (관계) 업무상 위력, 피해자 취약함이나 궁박한 상황이용 범행</li></ul>

9)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음란물의 형식이 문자일 경우에 이를 감경요소로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자살, 심각한 후유장애)</li> <li>○ (음란물 형식) 피해자의 이미지를 활용한 정보</li> <li>○ (협박) 유포 관련 협박이나 강요 또는 이와 관련한 암시</li> <li>○ (횟수) 계속적, 반복적 범행</li> <li>○ (방법) 공개된 SNS 계정이용, 다수가 참여한 채팅 방 이용 등</li> <li>○ 동종전과</li> </ul>
---	--

표 14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대 여성가족부 양형기준 의견

### 가중 요소

- 가중요소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미성년자일 경우 행위불법과 결과불법 양 측면에서 모두 비난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것입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결과<sup>10)</sup>(2018년)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게임채팅이나 SNS 등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 등 언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 하더라도 성행위 장면에 대해 상세하고 집요하게 묘사함으로써 음란한 도화나 사진을 도달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사진, 영상 등으로 음란물을 전달하는 경우와 불법성에 있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이루어진 음란행위를 감경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성적 모욕과 위협의 의도가 포함되고, 스토킹 수준의 지속성이 있는 경우는 더욱 중한 가중처벌 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음란물의 형식과 관련하여 피해의 중한 결과를 호소하는 주요 사례는 피해자 본인의 성적, 신체 노출 이미지를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와 일명 지인능욕 사진이라 불리는 합성 사진(피해자의 일

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2018)

굴에 다른 제3자의 나체 합성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피해자들은 유포 협박을 받은 것과 같은 두려움, 불안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려는 비난 가능한 동기가 분명한 의도적인 행위 경우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단체 대화방, 피해자의 공개된 SNS 계정 등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이루어진 경우 다시 당할 가능성으로 위축되어 활동의 제약을 받고,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이 위축되어 연락처를 바꾸고 공동체를 탈퇴하는 등 일상을 완전히 재조직하게 되는 등의 심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바, 행위불법, 결과 불법이 모두 중대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중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 그 외 가중요소 중 업무상 위력, 피해자 취약함이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한 범죄, 자살, 심각한 후유 장애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가 극히 심각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 감경 요소

- 감경요소와 관련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을 경우, 가해자가 초범일 경우, 단발성(1회)의 범행일 경우에는 행위자 표지로서 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sup>11)</sup>의 양형 기준에 관한 의견

- 양형 시 고려해야 할 감경 요소와 가중요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11)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감경요소	가중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 불원(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관계인 경우 제외)</li> <li>○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삭제 노력 등)</li> <li>○ 초범*</li> <li>* 초범의 경우도 다수, 장기간 상습적 유포시 감경요소로 볼 수 없음</li> </ul> <p>※ 현재 촬영과 유포 범죄를 분리하여 처벌하고 있고, 유포에 대한 피해자의 불안·공포를 고려할 경우 미유포를 감경사유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 수단) 개조 또는 불법적 수단을 통한 특수한 제품으로 촬영(변형카메라 등)</li> <li>○ (촬영 장소) 폐쇄된 공간(ex)집, 숙소, 화장실, 탈의실)에서의 촬영</li> <li>○ (피해자) 미성년, 장애인, 다수</li> <li>○ (관계) 지인, 업무상 위력, 피해자 취약함이나 공박한 상황이용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촬영</li> <li>○ (피해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자살, 심각한 후유장애), 피해자 신원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지 여부로만 판단하기 보다는 제목, 게시글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li> </ul> </li> <li>○ (촬영 내용) 성행위 촬영,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강간 등 성범죄 행위 촬영),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슴, 성기 등)</li> <li>○ (협박) 유포 관련 협박이나 강요 또는 이와 관련한 암시</li> <li>○ (의도성) 보복 등 비난 동기, 협박·공갈·데이트폭력 등의 수단 목적 등</li> <li>○ (유포범위) 불특정 다수에게 무제한 재생산이 가능해서 영구적 삭제가 불가능한 곳에 유포/ 피해자의 지인, 가족에게 유포</li> <li>○ 계획적, 영리적, 조직적 촬영 및 유포</li> <li>○ 반복성(상습범, 동종전과 포함), 공범</li> </ul> <p>가중</p>

표 17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대한 여성가족부 양형기준 의견

**가중 요소**

- 흔히 몰카라고 불린 은닉 촬영의 경우 공개된 장소는 물론 사적 공간에서 변형된 카메라를 사용하는 등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변형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는 치밀한 계획 범죄라는

점, 공공장소에 설치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내밀한 촬영을 위한 설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변형을 가하지 아니한 휴대전화 또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쇼핑백에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밑으로 촬영한 다던가, 각티슈에 휴대전화 또는 카메라를 넣어 화장실에 두고 촬영하는 경우 등도 비록 변형을 가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촬영한 경우와 달리 계획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가중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 2018년~2019년 1심 판결문 분석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촬영장소로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집이나 숙박업소와 같은 사적인 장소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피해이고, 은밀한 신체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매우 큽니다. 특히 외부에서 집안 내부에 있는 은밀한 신체를 촬영당한 경우 불안과 공포는 증폭되며 보복에 대한 우려까지 가중된 피해를 호소하는 바, 사적인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은 행위와 결과 불법성이 모두 중대하므로 가중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 또한 숙소, 화장실, 탈의실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촬영 역시 은밀한 신체 촬영을 위한 목적의 촬영이고, 실제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중하다는 점에서 촬영장소의 은밀성 또한 가중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여러 명의 공범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촬영하는 경우, 촬영을 교사하여 여자 목욕탕 등 여성 전용 시설에서 촬영을 하게 하는 경우 등의 사안에서 행위 불법성과 피해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공범이 있는 범행의 경우 가중요소로서 고려해야 합니다.

○ 성폭력 중에 촬영하는 '성폭력 촬영' 유형은 유포 협박으로 성폭력 은폐 수단으로 사용되고, 피해자의 유포에 대한 두려움 등 피해가 중대



하여 관련한 자살이 여러 건 나타나는 등 피해영향이 매우 큽니다.

- 또한 성폭력 장면 촬영 영상 외에도 성행위 장면의 촬영,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경우, 성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를 촬영한 경우는 유포되는 경우 성적 모욕과 비하가 일어나기 쉽고, 편집을 통해 재구성되는 경우도 많으며, 유포된 경우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영상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등 피해가 다중적이고 중대합니다. 가중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한 경우 낯선 관계에서 보다 피해가 중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를 끝내려 한다는 이유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연인관계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보복 목적, 공갈·협박의 비난 동기가 있는 촬영·유포의 경우는 가중요소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지인, 친밀한 관계, 업무상 위력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는 주변에 알려 질수 있다는 공포로 여성의 일상 생활에 끼치는 피해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등 행위 불법 및 결과불법이 심대한 경우이므로 가중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촬영물 유포의 경우는 가중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피해자 식별여부를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촬영물의 제목, 촬영물에 제공된 정보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피해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나 인스타그램 주소를 제목으로 표기하거나, 파일명을 oo에 사는 oo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고, 음란물 사이트와 같이불특정 다수에게 무제한 재생산이 가능해서 영구적 삭제가 불가능한 곳에 유포하는 경우의 불법성은 매우 중하다 할 것이므로 가중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 가까운 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유포가능성은 없지만 인간관계 및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등의 불법성이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제공의 경우에도 가중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그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등 불법의 정도가 매우 심대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포 관련 협박이나 강요 또는 이와 관련한 암시, 보복 등 비난동기 및 협박·공갈·데이트폭력 등 의도성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협박이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참조)<sup>12)</sup>인 관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협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유포 암시에 그친 경우 ‘구체적 해약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 및 결과반가치는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엄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감경 요소

- ‘감경 요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촬영범죄와 유포범죄를 분리하여 처벌하고 있고, 유포에 대한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를 고려하면,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감경사유로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는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모르는 사이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비율이 많고, 촬영물로 피

12)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얼굴이 드러나는 영상보다 신체 일부만을 촬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수회의 범행 중 마지막 범행에서 발각되어 초범이지만 실질은 초범이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드러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여도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감경사유로 고려하는데 신중하여야 합니다.

**(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1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 양형시 고려해야 할 감경 요소와 가중요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감경요소	가중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li> <li>○ 소극 가담</li> <li>○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다수, 13세 미만인 경우</li> <li>○ (관계)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취약함이나 궁박한 상황이용 범행</li> <li>○ (피해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자살, 심각한 후유장애), 피해자 신원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지 여부로만 판단하기 보다는 제목, 게시글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li> </ul> </li> <li>○ (촬영내용)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강간 등 성범죄 행위 촬영 등)</li> <li>○ (행위 의도성) 조직범죄, 비난동기, 심</li> </ul>

13)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제작 방법) 강압이나 위협 등을 통한 제작, 아동·청소년이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작 ○ 반복성(상습범, 동종전과 포함)
--	--

표 20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대한 여성가족부 양형기준 의견

## 감경 요소

- 양형시 표에 언급된 가중요소 모두는 각 행위불법 및 결과불법이 심대한 경우입니다.
- 의제강간죄의 객체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에서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가중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화상 채팅앱, 게임 등 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접근하여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아동 청소년 스스로 일명 몸캠 촬영을 유도하여 전달 받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 계획적이고 지속적 접근을 통한 범행이라는 점, 그루밍을 통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성착취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죄책감을 유발한다는 점 등 행위의 불법성, 결과의 불법성이 중대하므로 가중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바) 나가며

-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의 확대, 5G로 대변되는 데이터 통신 속도 개선, SNS의 발달로 인해 피해자의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고, 한번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날 오전에 화제가 된 범죄영상이 그 날 오후에는 전 국민 모두에게 퍼지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 카메라 장비의 소형화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적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유포는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유포피해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

한 엄벌이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겠지만, 디지털 성범죄 적발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라도 당장 이에 대한 엄벌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합당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추가 의견서(2019. 11. 14.)

### (가) 들어가며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반기('19.4월~'20.4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피해의 특수성이 반영된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 후, 관련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既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최근 소위 '다크웹 아동포르노 사이트'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사회적 공분이 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는 등 사회적 관심에 높아짐에 따라, 국가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 검토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 연합뉴스TV('19.11.3.) '다크웹에 숨은 자들, 처벌은 솜방망이' - "아동음란물의 경우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한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인 인식 변화에도 큰 도움이..."

### (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및 그 필요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①~⑤) 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 지난 양형위원회 회의 결과('19.9.9.), '디지털성범죄'로서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성범죄' 역시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세부 기준에 13세 미만 혹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로서 디지털성범죄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디지털성범죄의 일환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경우 보호가치가 보다 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법익 보호가 중대한 범죄인 만큼, 재판의 공정성, 국민의 예측 가능성 등 양형기준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대상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통해, 해당 범죄 양형 시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14)의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경우, 양형 시 고려해야 할 감경 요소와 가중요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감경 요소	가중 요소
○자수	○(피해자) 다수, 16세 미만 등

14)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제작 시) 소극 가담</li> <li>○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li> <li>○단발성(1회)의 범행(ex. 소지 음란물 건수가 단 1건인 경우 등)</li> <li>○음란물 형식이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가상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혹은 성인이 아동으로 가장한 경우 등</li> <li>○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li> </ul> <p>*감경 시 엄격히 볼 요소: 자백, 부양가족 유무, 성장과정, 범죄전력 여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취약함이나 궁박한 상황 이용 범행</li> <li>○(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자살, 심각한 후유장애 등), 피해자 신원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지 여부로만 판단하기 보다는 제목, 게시글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 필요</li> </ul> </li> <li>○(유통) 불특정 다수에 무작위 살포 등</li> <li>○(음란물 형식) 실재하는 아동 대상 실제 성폭력 내지 성착취를 통해 제작된 영상</li> <li>○(영상 내용) 가학적, 변태적 침해 행위 등 아동학대적 성착취의 중대성·심각성 수준</li> <li>○(고의성) 행위의 불법성·피해의 과급력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li> <li>○(의도성) 계획적·조직적 범죄, 범죄 수익의 정도, 기술의 난이도(공권력 수사를 피하기 위한 고난이도·복잡·특수한 기술을 활용, 범죄 행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li> <li>○(범행 정도) 음란물 제작·유통·소지 건수, 용량 등</li> <li>○(범죄전력) 재범 등 반복적 범죄</li> </ul>
---	---

### 가중 요소

○ 의제강간죄의 객체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에서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가중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중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 형법의 의제강간죄의 대상 아동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에 대한 고려를 바탕

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중학생 학령에 해당하여 저연령 청소년으로 취급되고 있는 점, 취약하고 궁박한 상황에서 이용될 가능성, 그루밍<sup>15)</sup>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가중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 현행법상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나 피해자의 취약함,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 여부에 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나, 인스타그램 주소를 제목으로 표기하거나, 파일명을 oo에 사는 oo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 신원의 노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촬영물, 촬영물의 제목, 게시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고, 음란물 사이트와 같이불특정 다수에게 무제한 재생산이 가능하여 영구적 삭제가 불가능 한 곳에 유포하는 경우의 불법성은 매우 중하다 할 것이므로 가중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스스로 촬영하게 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등 불법의 정도가 심대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아동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화상 채팅앱, 게임 등 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접근하여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아동 청소년 스스로 일명 몸캠 촬영을 유도하여 전달 받는 방식으로 음란물

---

15) 길들이기, 친분 관계를 활용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을 제작하는 경우, 계획적이고 지속적 접근을 통한 범행이라는 점, 그루밍을 통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성착취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유발한다는 점 등 행위의 불법성, 결과의 불법성이 중대하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음란물의 형식과 내용 요소 또한 양형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만화 등 가상의 인물 혹은 명백한 성인이 아동임을 가장하여 출연하는 경우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아동'에게 성폭력이나 성착취 학대를 가하여 영상을 제작하거나, 그러한 영상을 유통·소지했을 경우 죄를 더 무겁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성착취의 가학적 침해 수준의 중대성과 심각성, 음란물의 용량, 건수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 범죄 수익의 정도를 통해 해당 범죄에 대한 의도성과 고의성을 가중 요소로 고려할 수 있으며
  - 특히나 이번 다크웹을 통한 음란물 유통과 같이, 공권력 수사를 피하기 위한 고난이도의 복잡하고 특수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해당 범죄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감경 요소**

- 피의자가 자수를 통해 범죄 혐의를 수사당국에 고지하였을 때, 범죄에 소극 가담하거나 타인의 강압·위협 등에 의해 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소지 혹은 유통한 음란물의 건수가 단 1건 등 단발성 범행에 그쳤을 때,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심으로 기울였을 때 역시 감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음란물 형식이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가상의 캐릭터일 경우 혹은 명백한 성인이 아동으로 가장하여 영상에 출연한 경우 등은, 실제 존재하는 아동이 출연하는 경우 보다는 덜 엄격히 죄질을 판단하여 감

경요소로서 참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 현재 부양가족 유무, 성장과정에서의 고려할 점, 초범 등 범죄전력 여부  
부가 양형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라) 나가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그 제공·배포·소지 등 공급이 해당 음란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은 기존 일반 음란물에 대한 소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소비로 전이·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수요는 다시금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통한 음란물 제작 공급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유통·소지가 근절되지 않는 이상, 전 세계 어디에선가 국적을 불문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로 고통받을 수 있음이 우려됩니다.
- 양형기준 설립이 시급한 여타 많은 범죄 유형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양형기준 설립을 재차 요청드리는 것은, 해당 범죄에 대한 기준 설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실로 상당하고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 그간 기소·선고가 내려진 사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나 본 양형기준의 설정을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 예측가능성이 보다 상세해져, 잠재적 범죄자들로 하여금 해당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범죄 유형인 만큼, 향후 보다 적극적인 경찰 수사와 기소 또한 예상됩니다.
- 양형기준 설정이라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소중한 법익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여성가족부가 성인지적 감수성에 기반하여 검토한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국민신문고 게시판'

### ○ 접수 의견

순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9.10.10.	○ 경매방해죄에 대한 형벌 강화
2	2019.10.18.	○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했는지 문의
3	2019.10.21.	○ 동물학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9. 10. 10. 접수번호 : 2AA-1910-218973)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경매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9. 10. 18. 접수번호 : 2AA-1910-401079)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19.6.3. 양형연구회는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

을 개최하여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였고, 양형위원회는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 양형위원회 제98차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또는 수정안 심의(양형인자/집행유예 참작 사유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9. 10. 21. 접수번호 : 2AA-1910-446517)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동물학대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민원 우편

○ 접수 의견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9. 12. 11.	○ 마약류 신고 포상금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협조에 따른 양형기준</li> <li>○ 필로폰 소지양에 따른 양형기준</li> <li>○ 월간 마약 동향 시세표</li> </ul>
--	--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은 별첨 자료로 보내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양형기준」 및 「2019 양형기준 추록」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서는 시행중인 양형기준을 양형기준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의 문의사항은 양형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